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6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2
2. 부양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등 (이정현의원안)	6

I. 개요

1.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8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3.
- (3) 회 부 일 : 2025. 11.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30%¹⁾,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⑤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체육시설이 용료 등	3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동 제도는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며, 최근 2025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적용기한이 2028년 말로 한 차례 더 연장되었음²⁾.

공제율의 경우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³⁾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 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⁴⁾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4조 884억원에 달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3,859억원, 2026년에는 4조 6,2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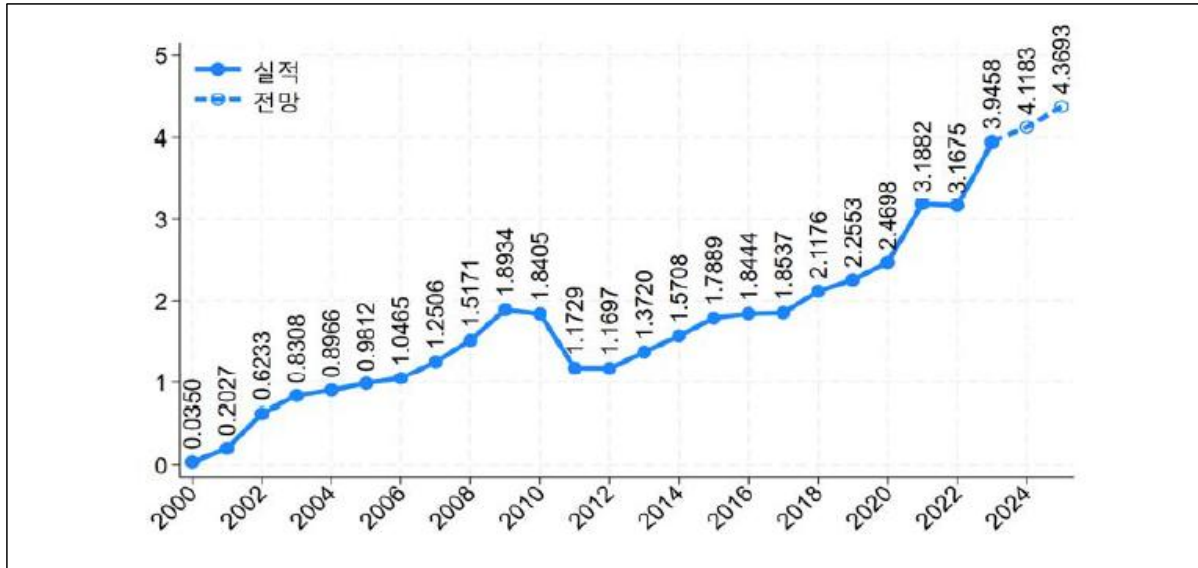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0,884	43,859	46,29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 9.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2. 부양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등 (이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td><td rowspan="2">30%</td></tr><tr><td>※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r><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table>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r><tr><td colspan="2">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td><td>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td><td>1명: 25만원 2명 이상: 50만원</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1명: 25만원 2명 이상: 50만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현행과 같음)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r><tr><td colspan="2">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td><td colspan="2">1명: 40만원 2명: 80만원 3명 이상: 100만원</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		1명: 40만원 2명: 80만원 3명 이상: 100만원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1명: 25만원 2명 이상: 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		1명: 40만원 2명: 80만원 3명 이상: 100만원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정현의원안 2025. 11. 3. 제출(의안번호 13861)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40만원, 2명인 경우 8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더하여 추가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25년까지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이었으나,
최근 2025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이하 “자녀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음.

구체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상향시킨 연간 350만원 한도,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100만원의 한도를 상향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또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추가적으로 25만원의 한도를 상향한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50만원이 상향된 연간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됨.

□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2025년 개정되기 전에 발의된 것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⁵⁾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⁶⁾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가구⁷⁾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111만 6천원으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17.8%, 가구 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음. 이는 2021년 월 97만 6천원 대비 14만 증가(14.3%)⁸⁾한 수치임. 또한 중국 내 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녀 수에 따

5)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7)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8)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5.5.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라 차등적인 소득공제를 설정할 경우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소비지출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부양자녀 등의 수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적으로 상향된 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일부 달성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현행 법률에 따른 추가공제 한도를 비교할 경우, 현행 법률은 부양자녀등의 수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까지도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법률에 따른 추가공제액이 개정안보다 더 큰 반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현행 법률에 비해 개정안의 추가공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현행 법률과 개정안 간 부양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비교]

부양 자녀등 수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현행 법률 (2025년 개정)	개정안	현행 법률 (2025년 개정)	개정안
1명	350	340	275	290
2명	400	380	300	330
3명 이상	400	400	300	350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부양자녀 수가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 차등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추가 양육비를 보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보다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이 현행 법률에 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구간에 대하여 더 높은 추가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는,

면세점이하의 저소득자⁹⁾는 소득공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에 관하여는 최근(202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동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어 개정안의 취지는 기반영되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자녀 양육 가구의 공제한

9) 2023년 33%

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이 2026년 3,109억원, 2029년 5조 4,030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5조 6,601억원(연평균 3조 9,1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 (안 제126조의2제1상, 제10항)	△3,109	△48,364	△51,099	△54,030	△156,601	△39,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